

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
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안
(김성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33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. 23

발 의 자 : 김성주·허종식·전용기
윤영덕·정춘숙·김교홍
김윤덕·문정복·강준현
김민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공공보건의료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 의료 안전망으로서 빈번한 공중보건위기의 발생, 급격한 고령화 추세, 만성질환 확대, 의료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.

특히 국립대학병원에 대해서는 해당 권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, 현재 국립대학병원, 국립대학치과병원, 서울대학교병원,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나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.

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여 보다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 제공은 물론 국가 보

건의료 전반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, 교육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이에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역할과 기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,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립 및 육성지원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, 의학 및 치의학 등의 발전에도모하며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
나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, 교육연구 및 진료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,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(안 제2조).

다.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은 법인으로 하며, 의학과 또는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별로 각각 설립함(안 제3조, 제6조).

라.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,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, 의료인력 파견, 교육연구 및 진료 등의

사업을 행함(안 제9조).

마.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에 12명의 이사를 두고 이사는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,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함(안 제10조, 제14조).

바.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서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임상교수요원을 두고, 임상교수요원을 국립학교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해당 병원이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은 관련 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봄(안 제16조).

사.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고, 그 정원을 관련대학 총장이 감축할 경우에는 원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(안 제17조).

아.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, 교육·연구·진료 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를 설치함(안 제18조).

자.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(안 제21조).

차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해 세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(안 제23조).

카.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

립대학병원발전기금을 설치함(안 제25조).

타. 보건복지부에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고,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함(안 제28조).

파.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사업계획의 시행결과를 매년 평가하고,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출연금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음(안 제32조).

하.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, 「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」,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,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」을 폐지함(안 부칙 제2조).

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(이하 “대학병원”이라 한다) 및 국립대학치과병원(이하 “치과병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 및 육성지원하여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·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및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병원 및 대학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의학 및 치의학에 대한 교육·연구 및 진료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지원, 시설·장비의 확충,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의 조성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은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제2장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의 설립·운영

제3조(법인격)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법인으로 한다.

제4조(등기) ①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
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조(정관) ①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
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사업에 관한 사항
5.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
6. 의학, 치의학, 약학 및 간호학 등의 교육·연구에 관한 사항
7.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8. 조직에 관한 사항
9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10.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1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12. 공고에 관한 사항

13. 해산(解散)에 관한 사항

②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 변경하려는 정관 중에서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6조(설립) ①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학과(약학과, 제약학과 또는 간호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. 이하 “의학계”라 한다) 또는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(이하 “관련대학”이라 한다)별로 설립한다.

②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分院(分院)을 둘 수 있다.

제7조(병원의 명칭)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“병원”을 붙여 사용한다.

제8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인 자는 제7조에 따른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9조(사업)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
2.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조정관리

3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교육
4. 의학과 및 치의학과 학생의 임상교육(臨床敎育)
5. 전공의(專攻醫)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
6. 의학과 및 치의학과 관련 연구
7. 임상연구
8. 진료사업
9. 그 밖의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

제10조(임원) ①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2명과 감사 1명을 둔다.

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,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“당연직 이사”라 한다)과 이사회가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해당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의 장
2. 관련대학의 의과대학장
3. 관련대학의 대학병원장(해당 학교에 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 또는 치과병원장(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4.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의 3

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

5. 해당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

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.

④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, 감사, 대학병원장 또는 치과병원장이 될 수 없다.

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, 감사, 대학병원장 또는 치과병원장이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.

제11조(임원의 임기)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12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.

④ 감사는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(監査)한다.

제13조(이사회) ①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각각 이사회를 둔다.

1. 조직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3.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4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5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4조(원장) ①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에 원장 1명을 둔다.

- ② 원장은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을 대표하며,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원장은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, 교육·연구와 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④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.
- 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⑥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⑦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.

1.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
2. 회계부정(會計不正)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준 경우
3.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

⑧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 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(定數)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.

제15조(직원 등의 임면)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에는 의료요원과 직원을 두되, 그 임면(任免)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6조(임상교수요원) ①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에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(臨床教授要員)을 둔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「고등교육법」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상교수요원을 「고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했거나,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은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.

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,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7조(겸직) ①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이 제9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 총장이 허가한다.

③ 관련대학 총장이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할 때에는 원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의 육성지원

제18조(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)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, 교육·연구·진료의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공동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과 위원회에서 호선된 대학병원장

또는 치과병원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

1. 대학병원장 또는 치과병원장
2.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
3.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
4.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
5.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6. 그 밖에 병원 경영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·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
2.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의 교육·연구·진료에 관한 사항
3. 국립대학병원발전종합계획 및 연차별 추진에 관한 사항
4. 「국가재정법」 제74조에 따라 국립대학병원발전기금의 기금운용 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
5. 그 밖에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21조(국립대학병원발전종합계획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에 따

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병원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내용,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(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) ① 정부는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의 설립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(讓與)·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, 대부 또는 사용·수익의 내용,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(세제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, 의약품 등에 대하여 「관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24조(출연금 등) ① 정부는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의 기본 시설·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(出捐金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,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.

③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·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(借款)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. 다만,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또는 치과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

제25조(기금의 설치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병원발전기금(이하 “발전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발전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·운용하되,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(발전기금의 조성)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
2.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
3. 발전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제27조(발전기금의 용도)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.

1.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
2.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의 교육연구진료사업
3.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종사자에 대한 교육 사업
4. 종합계획 및 병원별 발전계획의 시행 지원
5. 그 밖에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의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
제28조(전담조직의 설치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대학병원장 또는 치과병원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전문적·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보건의료정책의

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공공보건 의료사업 전담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조직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조직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장 보칙

제29조(회계연도)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.

제30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① 대학병원장 및 치과병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제21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병원별로 수립하는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제31조(결산서의 제출 등) ① 대학병원장 및 치과병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

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 심의·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
2.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
3.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

제32조(평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 사업계획의 시행결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,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,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도·권고·공표하거나 제24조에 따른 출연금 등을 보조·교부할 경우에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
제33조(감독)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하며, 업무·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제34조(「민법」의 준용)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35조(과태료) ①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.

1. 국립대학병원 설치법
2.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
3.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
4.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

제3조(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병원, 「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,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,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으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, 「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」,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,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

법」에 따른 등기와 정관은 이 법에 따른 등기와 정관으로 본다. 다만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제5조에 맞게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이 법 시행 당시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, 「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」,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,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라 임명된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, 병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이 법 시행 당시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, 「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」,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,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」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 및 의료인력, 임상교수요원, 겸직 중인 교육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⑤ 이 법 시행 당시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, 「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」,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,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 및 치과병원이 승계한다.

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종전의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, 「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」,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,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」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

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